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6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이성윤 · 김기표
정동영 · 박지원 · 윤종균
용혜인 · 서영석 · 진선미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,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3 신설,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제4항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2절에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3(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조치) ① 사업주는 직장 내에서 「형법」 제303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7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
제39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14조의3(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조치) ① 사업주는 직장 내에서 「형법」 제303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7조(벌칙) ① (생략)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2. (생략)	제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2의2. (생 략) 3. ~ 9. (생 략) ③・④ (생 략) 제39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・1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2. ~ 8. (생 략) ⑤ (생 략)	<u>2의2.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</u> <u>2의3. (현행 제2호의2와 같음)</u> 3. ~ 9. (현행과 같음)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제39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 <u>1의3.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</u> 2. ~ 8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--	--